

韓國警備協會의 活性化 方案  
-韓日警備協會의 比較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Security association

최은하\* · 김학범\*\*

<목 차>

I. 序 論	IV. 韓國警備協會의 活性化 方案
II. 韓國警備協會의 淵源	V. 結 論
III. 韓日警備協會의 比較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일본전국경비업협회, 한국경비협회, 민간경비, 비교, 범죄예방서비스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제1저자)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공동저자)

## I. 序 論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범죄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초기 민간경비는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 한계를 보완책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개인의 정보보호는 물론이고 심리적 안정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사회불안요인을 감소하는 사회 안전관리에 범죄예방의 주체자로 자리 잡고 있다(공배완, 2006 : 52-53).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경비 관련 실무자와 학계에서는 민간경비 전반의 내실화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비협회의 활성화를 제언하고 있지만 경비협회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 한국경비협회가 어떻게 조직,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또한 민간경비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으로써 경비협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비협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료는 각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수행되어진 것이며, 한국경비협회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기관을 방문 및 협회임원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II. 韓國警備協會의 淵源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이 제정된 이래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1999년 3월에 개정된 법률은 1976년부터 근 20여 년 동안 사용하여 오던 ‘용역경비업법’명칭을 ‘경비업법’으로 바꾸어 포괄적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시스템이 점차 도입되어 경비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과 1993년도 국제행사인 ‘93 대전 엑스포박람회 이후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1978년 10여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가 2006년에는 2,530개, 경비원수 130,000명에 이를 만큼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임명순, 2006 : 362). 이러한 성장과 관련되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한국경비협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경비협회는 당시 용역<sup>1)</sup>경비업법의 제정에 따라 1개만이 인정되어, 용역경비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1978년 8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무교동 엠파이어 호텔에서 10명의 회원사 중 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 치안본부 경비과 방호계 경감 박동범의 사회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민간경비업계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한국경비협회 20년사, 1998 : 54).

당시 용역경비업법을 보면, 경비협회는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 공익과 교육, 연구를 담당하면서 경찰청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매개적인 역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한국경비협회의 탄생은 자발적으로 경비업계 내에서 필요성 인식하고 그 요구에 의하여 생성되었다기보다는 당시 보험제도가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 경찰이 민간으로 경비업무를 이관하면서 사고발생시, 그 협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호 장치로 1개의 협회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로 인하여 더 이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협회로 담보할 이유가 없어진 이상 경비협회를 1개로 규제할 이유가 없어졌고, 현 경비업법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협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즉 경비협회의 무한 경쟁시대가 온 것이다.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하면 한국경비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 그리고 일반 경비원 및 특수 경비원의 교육을 전담하고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비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하고자 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일본의 명문규정이 없는 것과는 달리 경비업법 제6장 제22조와 제23조 두 개조의 조문을 근거로 하여,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함을 명명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 사회경비 분야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특히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끊임없는 정책적 대안의 연구·개발, 대정부 건의 및 로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경비의 인식 전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회원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정진환, 1995 : 64-65).

1) 현재는 「용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용어이나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III. 韓日警備協會의 比較

#### 1. 韓日 警備協會의 組織

##### 1) 회원

한국경비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회원’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협회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경비업에 관한 학식과 경비업 및 협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사회 경제 분야에 경험과 덕망이 높은 자나 경비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되 이 경우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고 정관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찬조회원”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정회원”은 전국경비업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도도부현을 구역으로 하는 지방 경비업협회 등의 단체로 되어 있다. 즉 우리와는 달리 각 경비업체는 “가맹기업”으로 되어 있을 뿐, 회원은 어디까지나 47개 도도부현 경비업협회이다. 이들 지방 경비업협회는 주요 지구별로 경비업협회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비업협회의 정관에는 “찬조회원”을 “본회의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동경도경비업협회(東京都警備業協會)에는 찬조회원으로는 <표 3-1>과 같은 기업이 등재되어 있다. 즉, 경비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기기, 장비, 제복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찬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찬조회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박병식(2003 : 5)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의 문화적 상이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표 3-1> 동경도경비업협회 찬조회원

아이콧(주) 동경영업소	통신기기의 제조·판매
아베테크노 시스템(주)	통신기기의 개발·제조
윌지(주)	장비품의 알선·리스
(주)金星	경비제복·경비용품의 제조·판매
프리벤션(주)	경비제복·경비용품의 제조·판매
(주)베스트	경비제복·경비용품의 제조·판매
마쓰모토 휘장공업(주)	뱃지·기념품 등의 제조·판매

## 2) 임원의 선임과 역할

한국경비협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선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는 보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결과는 전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전국경비업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4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상임이사 11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포함), 이사 28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그리고 감사 4명 이내로 되어 있으며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임원의 선임방식은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의 경우에는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들이 회장·부회장·전무이사·상무이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임원의 대부분은 전국경비업협회의 회원이 지방 경비업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도부현 경비업협회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국경비업협회의 특징이라 하면 전무이사와 상무이사 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전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전무이사는 우리의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경찰본부장 출신이며 상무이사는 홋카이도(北海道)방면 본부장 출신이다.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것은 형식상 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협회를 관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하는 역할은 경비업자가 아닌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인 것이다(박병식, 2003 : 7). 이를 경찰청과의 유착이라는 우려보다는 협회가 지향하고자하는 목적을 이해한다면 협력기관과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찰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할 경찰청이 피고가 되어 대립관계를 갖는 등 실상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2) 서울행정법원 1998.10.14. 선고 98구8444 ;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경찰청이 피고가 되어 협회와 소송당사자로서 법정까지 갔다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적인 예이다.

### 3) 임원의 임기와 보수

한국경비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중 재임한다. 임원은 회원 총수의 1/3이상 동의 또는 경찰청장은 특정임원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적시하여 임원의 탄핵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표결에 부쳐야한다. 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요구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되며, 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만일 회장의 탄핵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 임원도 함께 해임된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상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은 심신상실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상의 업무위반 등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임된다.

임원은 전원 명예직이지만, 전무이사과 상무이사과 같은 상근임원만은 유급이다. 상근임원의 보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

### 4) 회의

한국경비협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로 회의를 한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연도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의사회의 의결을 통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 재적 1/3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적시하여 요구 할 때, 임원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기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총회는 재적대의원과반수 출석과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정관의 변경, 중요사업계획과 세입세출결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회비 또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 경비원의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중요한 대정부건의에 관한 사항, 경비 도급금액에 대한 관리·운영비·공제율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의사 결정시에는 총회와 마찬가지로 재적이사 과반수출석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이루어진다. 이사회에서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안 및 예산변경 안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일시 차입 및 기부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자격상실 처분·회원 청원에 관한 사항, 회원 및 경비원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경비원 교육비 부담액 고시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기준 및 조정업무건의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진다.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도 회장이 맡는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찬조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총회는 매사업 연도의 시기에 소집하는 통상총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4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상임이사회는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총회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협회의 목적사업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회무 중 중요한 회무의 기획, 입안 및 집행에 관하여 의결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중요한 회무의 집행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총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의 긴급사항(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5) 위원회

한국경비협회에서는 총무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국제분과위원회, 기계분과위원회, 시설 및 특수경비분과위원회, 신변보호 및 호송경비분과위원회, 공동주택경비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관 제23조의2에서는 경비업의 발전 및 협회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의 해결을 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비업 및 협회의 발전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무위원회, 방재위원회, 경비업중앙협의회, 각종특별위원회, 기술연구전문부회가 있다.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정관은 「회장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 2. 한일 경비협회의 활동

### 1) 협회의 목적

한국경비협회는 그 목적에 대해 정관에서 「협회는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행하며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고 경비업의 사회적 신뢰제고와 생활안전의 향상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경비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경비진단의 체계화·과학화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공탁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경비업 육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대정부 건의
- 경비장비의 표준화 및 알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호의 규정에 의거 협회에 위임, 위탁된 업무
- 협회 소유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항
- 경비업법 및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 권고를 위한 자율조정 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정관에서 협회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회원이 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지도
- 경비원 교육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그 자격의 부여
-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자격의 부여
- 경비업에 관한 홍보 및 출판물의 간행
- 경비업무의 적정화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 경비용 기자재의 연구, 개발 및 알선
- 관계 행정청이 행하는 방법 활동 및 사고방지 활동에의 협력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중에서 일본 전국경비업협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경비원 교육담당자 및 경비원의 교육훈련과 자격의 부여에 있다. 즉 협회의 가장 큰 역할



이 교육훈련이란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 2) 경비원 교육담당자의 교육훈련과 자격의 부여

### ①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오늘날 경비업무자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경비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교육훈련의 강조는 경비업계와 경비원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경비산업을 전문직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민간경비의 존립과 회사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사항이다(임명순, 2006 : 376).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비업무의 일선 실무자인 경비원의 자질향상 문제이다. 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하여는 교육훈련, 보수, 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문제라 할 것이다. 민간경비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도 경비 산업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로 경비원의 자질문제를 들고 있으며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임명순, 2006 : 363).

한국경비협회에서의 교육제도는 크게 경비원의 교육제도와 경비지도사 제도로 나뉜다. 먼저 경비원의 법정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2001년 경비업법의 전면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전문경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경비원은 크게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게 되었으며, 교육은 성격에 따라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에 대해서는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처음 접하는 자인 경우 신입교육을 통해 경비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신입교육과,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법령 등을 교육시켜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과 질 높은 경비서비스를 시설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진다. 신입교육인 경우에는 28시간, 직무교육인 경우에는 4시간의 교육시간이 주어진다.

특수경비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력을 높이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경비원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이다. 특수경비원이라고 하면 경비업체에 소속된 경비원으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88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석이 된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보다 교육시간이 더 많고, 특히 시행규칙 제16

조2항에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입교육의 경우에는 언급한 바와 같이 88시간,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6시간의 교육시간이 주어진다.

경비지도사는 제5차 개정시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자인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도입되었다. 경비지도사는 민간경비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경비수준의 향상과 원활한 공경비·사경비의 상호협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래 민간경비분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국가자격이라는 점에서 경비원의 지위와 자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임명순, 2006 : 367).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주관하는 선발시험에서 합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그리고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등을 행한다.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일반경비지도사 제도는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기계경비지도사 제도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2년 일본경비업법의 개정에 의해 경비업체는 영업소마다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경비원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종사시키도록 하였다(임명순, 2006 : 367).

일본에서는 전국경비업협회가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합격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경찰청은 전국경비업협회에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의 유지·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 교부자 및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전문지식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지도교육책임자에 대한 재교육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전국경비업협회도 그 개선을 검토하여 제언하고 있다.

우리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자격자에 대한 재교육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업의 눈부신 발전과 경비업법의 개정은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재교육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모든 경비지도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또 실익도 없겠지만, 적어도 업무상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는 예컨대 2년마다 8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

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경비협회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② 세미나 코스 개설

한국경비협회는 년 1회 10월 중순경에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2006년도의 최고경영자세미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0월 26~27일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개방된 민간경비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 하에 「민간경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 민간경비교육제도 개정과 시사점」, 「위탁제 교육 폐지에 따른 민간경비업계의 현실」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인원은 약 400명 정도였고 참가비는 무료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전국경비업협회는 내일을 짊어질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2년 4월에 최초로 신규 세미나 코스를 개설한 이래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경비업의 실정에 적당한 주제를 기획하여 우수강사진을 초빙하여 실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경비업협회는 경비원교육 강사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경비업협회는 독자적으로 연수센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미나는 이 연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연수센터 후지노」는 동경에서 60분 거리의 쓰쿠이군 후지노에 위치해 있으며, 세미나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고 수용인원은 총 114명이다.

### ③ 경비원검정의 지정강습 실시

우리의 경우에도 경비원 등의 검정제도가 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제도를 도입·발전시켜 우수한 경비원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인증해주는 검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다(제11조의2). 국가공안위원회는 경비원 검정의 종류로 공항보안경비, 상주경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등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의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으며(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경비원 검정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강습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경비업협회는 이 중에서 상주경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등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등 네 가지에 대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경비업협회가 지정강습기관으로 지정받은 이유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는 “전국경비업협회는 지정강습 실시능력에 관한 체제 및 지정강습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설립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경비원 등의 교육·연수사업(공항보안경비 관련교육을 제외함)을 해 온 유일한 기관으로서 널리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고 지정받은 강습사업을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기초한 지정기준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제도로 교통유도경비가 있는데 이는 박병식(1998)이 90년대부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익근무 요원과 의무경찰로 보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려할 여지가 있다.

최근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경비원 검정에 혼잡경비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전국경비업협회는 혼잡경비 검정제도가 시행될 것을 시야에 넣고, 「혼잡경비 특별강습 받기 작업부회」를 설치하여 준비를 해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중요시설에의 경비원 배치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원 검정취득자를 배치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였다. 중요시설에의 경비원 배치와 관련된 경비원 검정제도로는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이다. 현재 업계에서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에 활동하고 있는 경비원은 적지만, 경비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정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경비업협회는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의 특별강습 내용을 개정하기로 하고 작업부회를 설치하여 검토하고 있다.

경비원 검정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수경비원은 현재 80시간의 신입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받는다. 그러나 법정 신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특수경비원은 물론 경비업자에게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공항보안경비 1급 검정의 경우, 학과시험은 경비업무의 기본사항, 경비업법·항공법 등 관계법령, 승객접대 서비스 및 영어, X-ray 투시식 수하물 감시장치 등의 작동원리 및 기능에 대한 지식, 공항 관련사항, 이 위험물 발견시의 응급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승객 등의 접객, 수하물 검사, 공항보안검사업무의 관리, 위험물건 발견시의 응급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3) 출판물의 간행과 판매

한국경비협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판물의 간행과 판매에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2007년 6월 18일 출판물 간행에 대한 문의를 한 당시에 아직 준비 중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의 출판물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월간 「시큐리티 타임」(Security Time)의 발간

전국경비업협회는 협회의 기관지로 월간 「시큐리티 타임」을 발간하고 있다. (월 800엔, 1년에 82,00엔, 2년에 16,000엔 발송료 포함)

② 교재·문제집 및 비디오의 발행 및 판매

전국경비업협회는 각종 교본, 지정강습의 교재, 각종 문제집과 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로, 판매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경비업회도 우리 한국경비협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출판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회원사라고 해서 무료로 배부하지 않고, 비회원사보다 약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교재나 문제집 외에도 비디오나 각종 용지나 배지 등과 같은 잡화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4)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교류와 사업추진

얼마 전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공항, 철도, 종합청사 등 국가보안 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직에 제대군인들이 우선 채용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즉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한국경비협회가 13일 특수경비 직종에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비협회 황승모 회장은 “매년 필요로 하는 2000여명의 인력 중 제대군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협회에 소속된 특수경비업체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은 후술하게 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방위청과의 연계와 유사한 사례이고 경비협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의 실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한국경비협회의 경우에 있어 여러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에서보다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과 노동부와의 교류가 있지만 일본의 다각적인 교류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급해 보겠다.

전국경비업협회는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청, 후생노동성, 소방청,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경비업의 업무확대에 대한 지원·협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성과는 테러대책에 의한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법무성과는 신설 교도소의 경비, 경찰청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한 위법주차단속업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다.

5) 국제포럼의 개최

일본에는 시큐리티 관련학과를 둔 대학이 없다. 유일하게 기술전문학교가 있을 뿐이다. 동경도립 오오타(大田) 기술전문학교의 「시설경비과」가 그것이다. 시설경비

과에서는 시설경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본동작, 준수사항 등 실무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교육기간은 3개월이다. 최근 일본 경찰청은 오오타 기술전문학교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경비원 신입교육을 면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전국경비업협회는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이를 특별강습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하여 검정취득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에서는 외국의 경비업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업계의 대표자와 협회 간부를 중심으로 외국의 경비업에 대한 조사연구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는 외국 업계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경비업협회는 2003년 6월 12일 독일 경비업 연구의 1인자인 스피어(Speyer) 행정대학의 라이터 피차스(Pitschas) 교수를 초빙하여 「독일의 경비업 21세기초의 현상과 전망 : 범죄방지에 있어서의 경찰과 경비회사와의 연계」라는 제목을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도 학부에 단독적인 민간경비학과라는 명칭으로는 없지만, 그에 관한 기초적 학문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개설되어 교육되어지고 있다<sup>3)</sup>. 1999년 12월 민간경비학회는 관련 교수들의 한국민간경비발전을 위한 학회창립 의견개진 한 이래로 현재까지 꾸준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 IV. 韓國警備協會의 活性化 方案

### 1. 조직측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경비협회와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조직의 외형상 차이는 큰 점이 없다. 다만 회원구성에서의 찬조회원의 존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경비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기기, 장비, 제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찬조회원은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관련 업체들을 회원의 범주로 포섭함으로써 협회의 재정적 내실을 기할 수가 있게 되고, 정회원인 경비업체와 찬조회원인 관련업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전무이사과 상무이사과 같이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가 아니면서도 이사의 지위를 갖고 협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시스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찰학 분야에서 경찰과 다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

3) 현재 전국적으로 2년제, 4년제를 포함하여 약60여개 대학에서 경호경비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되는 현 시점에서, 민간경비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의 문제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루어진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민간경비업 분야와 경찰과의 관계 개선과 상호 협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찬조회원제도와 전무·상무이사 제도들의 긍정적인 도입검토를 통해 경비협회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는 위에서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활동상에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교류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과도 연결되는 점일 것이다. 비단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같은 맥락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상의 구별에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경비협회가 경비업체에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함으로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모두 가입하도록 적극 유인하고, 구심력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간선제이던 회장을 직선제로 고치고 회원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몇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부는 물론 형식적인 지부 지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기능을 확충하며, 노동·세무·법무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협회가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업체들이 스스로 협회에 가입하고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게 됨으로써 협회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배성수, 2006 : 100).

## 2. 활동측면

### 1) 교육

현재 교육시설 및 강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비원 교육을 타 경비업체에 위탁시키고 있으나 이를 보강하여 자체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설이나 필요한 인원 배치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경비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회원사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뿐만 아니라 선두 경비업체 등의 출자도 가능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 관련되어 세미나 등의 확대실시도 필요할 것이다.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의 경우 연중에 4~5회의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강사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한국경비협회 일본의 경우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더 활성화된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진 경비업체를 양산하여 민간경비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경찰과 경비업체 그리고 학계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관계도모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세미나뿐만 아니라 자문서비스와 경영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경비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실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는 경영에 대한 자문이나 자료제공을 통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체 간의 관계에서는 무리한 계약 수주를 위해 과잉입찰을 하여 민간경비 시장의 시장운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이들 업체에 대한 올바른 경영자교육을 통하여 민간경비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김상권, 2006 : 86-8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자격자에 대한 재교육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업의 눈부신 발전과 경비업법의 개정은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재교육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모든 경비지도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또 실익도 없겠지만, 적어도 업무상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는 예컨대 2년마다 8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경비협회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기타 측면

우리 한국경비협회와는 달리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출판물의 간행과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다수의 출판을 통해 민간경비업상의 많은 경험과 학문적 산물을 축적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를 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매를 통한 수익은 다시 경비협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어 더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활성화된 출판활동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한국경비협회는 그 활동으로서 더 활발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하여야 한다. 현재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 민간경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와 일반적인 자료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비업체 자료와 장비를 수집하여 그들의 주요업무와 노하우, 상품, 장비사용법 등을 정리하여 회원사와 경호·경비관련 대학이나 관련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시장에 들어온 외국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비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민간경비 시장에 투자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의 경비업체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계는 연구에 더욱 더 증진할 수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모두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점이지만 경비협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업계



스스로 덤핑계약을 일삼는 회사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개인의 안전과 가정의 안녕은 국가 공경비인 경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금에 이르러 자위적 개념의 민간경비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국민들은 경비라고 하면 아파트 수위 정도로 생각한다. 민간경비가 범죄의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폄하하는 면이 없지 않다. 치안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경비업체에서 자금력의 압박에 의해 경비업무가 아닌 노조해산,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경비라는 용어자체를 부정적이고 폄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협회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시회 설명회를 통하여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변화시켜야한다. 이러한 경비협회의 기능은 앞으로 국내민간경비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급변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V. 結 論

경비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민간경비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경비협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첫째로, 경비협회는 현재는 단일하게 회원업체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협회는 「민법」 제40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더 이상 경비협회가 단일화가 아닌 다양화되어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경비협회가 난립을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요건을 갖춰 협회를 설립 가능하므로 한국경비협회 존립 자체의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과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경비협회가 오로지 회원업체의 회비만으로 운영을 충당하고 있고 회원업체들에 대한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재교육이 없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미나, 강사연구회 개최, 출판물 간행 및 판매 등을 비교해 볼 때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보여 진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성언(2005).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한국학술정보.
- 김재광(2004). 「민간경비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연구원.
- 박병식(2003).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의 운용현황”, 한국경비협회 최고경영자세미나 자료집.
- 한국경비협회(1998). 「한국경비협회 20년사」, 한국경비협회.
- \_\_\_\_\_ (2007). 「경비업의 교육 제도」, 한국경비협회 내부자료.
-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공배완 (2007).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28 : 11-37.
- 박병식(1998). “「교통안전경비」 개념 및 「교통지도원」 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 일본 「무사시노시」(武藏野市)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 2 : 99-110.
- 임명순(2006). “민간경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7호, 309-320.
- 정진환(2005).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치안문제」, 통권191호, 7-30.
- \_\_\_\_\_ (1995).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4. 31-70.
- 세계일보, 2007년 4월 13일자.
- <http://www.ksan.or.kr> 한국경비협회.
- <http://www.ajssa.or.jp>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

## ABSTRACT

### **A Study on Korean Security association - In comparison with All Japan Security Service Association -**

Choi, Eun-Ha·Kim, Hak-Bu

Thus in ord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KSA(Korean Security association) and to express opinions on its role and security, this paper introduces and discusses about All Japan Security Service Association(AJSSA), which is the prototype of the KSA.

There are several positive aspect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when these two associations are compared: the traffic security, a supporting member, ex-high-ranking police executive directors practically run AJSSA. These are to enhance financial ability and to promote better relationship with police. KSA needs to improve such relationship and to diversify activities as well.

In addition, not just dismissing their duty by giving them the license, AJSSA provides several educations to revitalize the related people so that they can deal in effective and productive services. In another words, JSA perceives it is indispensable to educate the relevant people in the business. In contrast, it is reality that KSA has not put much emphasis on educations. Concisely, the most prompt issue is it should be more beneficial to its members by strengthening itself. Not simply following the example of foreign cases, but putting diverse efforts, KSA can make it substantial and stabilize future private security market in a long term.

Key Words: AJSSA, KSA, Private Security, Comparison, Service of Crime Prevention